

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」 [별지 제4호서식]

## 개인위치정보사업 [ ] ① 양수인가신청서 [ ] ② 합병·분할인가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개월	
①양도, ②피합병 (분할) 또는 소멸 법인	상호(또는 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	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		
		담당자	전화번호	
홈페이지주소	E-Mail			

①양수, ② 합병 ( 분 할)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	상 호(또는 명칭)			
	성 명(대표자)			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		
		담당자	전화번호	
홈페이지주소	E-Mail			

양수 또는 합병(분할) 내용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※ 신청인 : 양수인 또는 현재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합병·분할 당사자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  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① 양수시	1. 사업계획서 1부. 2. 양수·양도계약서 사본 1부. 3.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4.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
	② 합병·분할 시	1. 사업계획서 1부. 2. 합병·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. 3.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4.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① 양수시	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영업소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
	② 합병·분할 시	합병·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(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

### 처 리 절 차

